

3-14-1

노인장기요양 3등급 이하 노인서비스 확대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이행도					
	임기내	임기후	국가	국가차체	자체	신규	지속	완료	이행후 계류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				○		○		○				
추진부서	고령사회정책과 (과장) 정종임 (담당) 강은숙 (담당자) 송지연 ☎ 613-3081												

□ 사업개요

구분	단기보호시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설치 시설	1개소 설치 후 → 수요에 따라 단계적 확대	현행 3개소('08.7.1. 이전 지원)
사업 기간	2020. - 2022.	2018. - 2022.
지원 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월1일 이상 9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기타 서비스 필요) -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 '08.7.1.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지원 내용	-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상담·교육, 무료급식, 정서지원 등

□ 재정현황

○ 투자계획

[단기보호시설]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초기 계획	현재 계획 (a+b+c)	기투자 (a)	임기내						임기후 (c)
				소계 (b)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510	510	0	390	0	0	180	100	110	120
국비										
시비	510	510	-	390			180	100	110	120

□ 확인지표 및 이행실적

확인지표	구분	총실적/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이후
단기보호시설 설치 운영	실적	1개소		1개소	2개소			
	목표	4개소(년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 운영	실적	23개소	7개소	7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목표	35개소	7개소	7개소	7개소	7개소	7개소	

□ 지금까지 추진사항

○ 단기보호시설 시범선정 및 운영 : 2개소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 3개소

- 재가복지시설 운영 용역 결과에 따른 지원계획(안) 수립

⇒ '19. 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인 사항 검토

- 지원받던 7개소 중 4개소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단계적 통합추진에 따른 지침시달 ('19.12.)